

군산시 공고 제2020-2083호

입법 예고문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군산형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창출과 촉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나.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군산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도모하여 신규 고용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으로 주민복지 증진하고자 함

※ 군산형일자리사업 : (~'24년) 5,172억원 투자, 직접 일자리 1,704개 창출

2. 주요내용

- 가. 군산형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3조~제5조)
- 다. 군산형일자리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라. 군산형일자리 창출 및 촉진사업의 추진사항 규정(안 제7조)
- 마. 관련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바. 상생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사. 군산형 일자리 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4조)
- 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 10. 26.(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곳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454-4349), 직접방문 등

라.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063-454-21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군산형 일자리 사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과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이하 “군산형 일자리”라 한다.)”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산·새만금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의 다양한 경제 주체 간에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2. “노·사·민·정”이란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주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4.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이라 함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상생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노·사·민·정 주체간 준수사항을 체결함을 말한다.
 - 가. “적정임금”이란 헌법에 보장된 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임금 수준, 임금체계 등 상생협의회가 합의한 협약임금을 말한다.
 - 나. “적정노동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생협의회 합의사항을 통해 적용한 노동시간을 말한다.
 - 다. “노사책임경영”이란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말한다.
 - 라. “원·하청관계 개선”이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상생협력사업”이란 참여주체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복리증진, 생산성 향상 등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군산형 일자리 기업” 이란 군산형 일자리 핵심의제에 대하여 노사민정 등의 주체와 상호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노·사를 비롯하여 상생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사민정의 각 기관과 단체 등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군산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 2. 군산형 일자리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 3.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 4.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
- 5. 군산형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 6.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이행 및 사업의 성과평가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창출 및 촉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창출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군산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컨설팅, 연구사업
- 2.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

- 3.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4. 군산형 일자리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지원
- 5.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 6.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지역생산품 마케팅 지원
- 7. 고용안정·유지·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
- 8.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해소, 노사상생프로그램
- 9. 노동복지 증진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노동자·사용자 대표
- 2. 지역 노·사·민·정 대표
- 3.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산·학·연·정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대표
- 5. 전라북도 및 지역 내 고용노동관서·중앙행정기관 대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 ④ 상생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 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창출 및 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군산형 일자리 육성 시책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5. 군산형 일자리 기업 선정 및 취소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상생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상생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생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상생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군산형 일자리 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선정된 기업이 폐업,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생협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기금) 시장은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창출 및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라북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 2020-2101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기존 공설시장 운영관리 상에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성 및 효율적 시장운영을 통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상인평가제 조항 신설(제11조)
- 사용갱신요구권 조항 삭제(제12조)

3. 의견제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별첨2)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전화 : 454-2702, FAX : 063-454-2659)

- 1) 전자우편(이메일) : hora11111@korea.kr
- 2) 전화 : 454-2702
- 3) FAX : 063-454-26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활성화계 (전화 063-454-27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별첨1)

바. 규제영향 분석서(별첨3)

【별첨 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를 일부개정 하여 기존 공설시장 운영관리 상에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성 및 효율적 시장운영을 통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상인평가제 조항 신설(제11조)
- 사용갱신요구권 조항 삭제(제12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10. 15. ~ 11. 04. (20일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제11조 관련)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산시장은 규정준수 여부, 교육실적 등 이 포함된 “상인평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 미달시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으며, 상인평가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를 “제5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① (생략)</p> <p><신설></p>	<p>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산시장은 규정준수 여부, 교육실적 등이 포함된 “상인평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 미달시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으며, 상인평가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u></p>
<p>제12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생략)</p> <p>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하고 남은 기간으로 하며, <u>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u></p>	<p>제12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제5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u></p>

【별첨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별첨 3】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계장 양선옥, 주무관 김성수							
4. 근거법령명등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공설시장 상인							
6. 규제존속 기한	○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사항 존속 일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종전규제》</p> <p>○ 해당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규제》</p> <p>○ 상인평가 조항 신설</p> <p>1. 상인평가기준에 따라 공설시장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미달자에 한해 사용허가 취소 또는 재계약 불허 조항 신설</p>							
8. 기 타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및 발생원인

- 공설시장 상인의 관련법령 및 조례 위반, 소비자 불편 등 민원발생
- 불성실 영업으로 인한 상권활성화 저해
- 막연한 재연장 허가로 상인경쟁력 약화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관련 법령 준수로 소비자 편의 제공
- 성실하고 창의적인 상인 육성으로 상권활성화 도모
- 명확한 재연장 허가기준 마련으로 상인경쟁력 강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공설시장 상인회 및 해당 상인 반대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공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적 운영으로 소비자·상인 만족도 증가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 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공설시장 운영위원회(상인회·전문가·시의회·시민단체·행정)에서 상인평가기준 마련

< 상인평가 항목(안) >

- ① 관련법령 및 조례 준수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3대서비스 혁신과제

< 3대서비스 혁신과제 >

- ① 편리한 지불결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맹, 발급여부
- ② 고객신뢰(가격 및 원산지표시, 교환/환불/AS 등)
- ③ 위생 및 청결

- ③ 상인의 영업성실도(점포매출액) / 세무서 매출신고, 상품권 환전액 등
- ④ 교육실적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3조, 제1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적정한 규제임
- 공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규제임

7. 규제집행의 적정성

- 적정

8.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9.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